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독자 권리 증진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6년 2월 16일

청 원 인

성 명 : 박민지

주 소 :

전화번호: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 의견서

청원인	주소 : _____
	성명 : 박민지
건명	독자 권리 증진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6년 2월 16일
<p>소개의견</p> <p>청원인 박민지 외 8인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 18회 임시회의 문화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과거에 비해 다양해진 언론 구조로 인해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을 위해 광고에 의존하거나, 뉴스 어뷰징 등 언론 윤리에 어긋나는 행태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모습이 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언론의 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과잉광고규제를 통한 독자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신문 등의 진흥을 위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p> <p>저희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6조 2, 3항을 개정한다. <p>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①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u>두어야 한다. 독자권익위원회는 오보, 명예훼손 등 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위원 구성은 사업자의 재량으로 하되,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은 사업자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이 없도록 한다.</u></p> <p>③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u>(단, 본문 내 광고의 크기는 가로·세로 3cm 이하로 제한하고, 본문 사진 및 줄글을 가리지 않도록 한다.)</u></p>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인터넷과 전자기기의 발달로 우리는 매일 다양한 사건, 사고 뉴스를 신문을 통해서 신속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환경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중소 인터넷신문이 우후죽순으로 탄생하게 되었고, 2014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무려 4,780종, 등록된 인터넷포털도 200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매체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기능도 있으나 검증되지 않은 기사, 정보들로 인해 보도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인터넷 매체의 경우 잘못된 보도가 순식간에 대중에게 전달되는 강한 전파력과 확산성을 가지고 있어 그 피해는 견잡을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독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신문사에서는 타 신문사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려다 보니 각종 오보와 과잉보도를 내보내고 명예훼손과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신문사에서는 수익 창출을 위해 뉴스 어뷰징(News Abusing)과 같은 보도 행태를 보이는 등 신문사 오보를 통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피해사례로는 종교적인 문제, 국제적인 질병문제, 정치문제 등이 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실종자 전원이 구출 되었다는 문자에 각종 방송사들은 정확한 자료인지 검토하지 않고 보도를 했다. 하지만 사건 진행이 한참 지난 후 실종자 전원이 구조 되었다는 것이 오보라는 내용을 듣고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게 했다.¹⁾ 그리고 다음해인 2015년에는 메르스 전염병이 퍼지자 과잉보도를 하여 사회적 불안감을 증가시켰다. 심지어 예방법조차 메르스 관련 뉴스 10개 중 7개는 오보였다.²⁾ 이런 보도를 통해 비상용품을 사재기를 유도하는 등 많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이 역시 신문사에서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조사하지 않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신문사에서 수익 창출을 위해 광고를 하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신문 배너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정도가 지나쳐 독자의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다. 그 사례로는 한 기사에서 광고가 기사 자료사진을 가려 기사를 보는데 불편함을 일으키는 일³⁾ 뿐만 아니라 기사 본문에서도 광고가 줄글을 가리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사를 위장한 상업 광고가 증가하는 네이티브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사례로는 한 기사에서 일반 다이어트에 관한 기사 글인 것처럼 꾸몄지만 본문은 다이어트 식품을 파는 상업적 광고를 제시하는 것과 같은 광고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아 신문사의 과잉광고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제시 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독자들의 불편함이 증가하고 국민들의 언론활동이 활성화 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법안을 통해서 국민들의 언론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독자권리의 증진, 언론의 신뢰성 및 윤리성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요골자

청소년의회 문화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6조 2, 3항을 개정한다.

-신구문 대조표-

현행	제정안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①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독자의 권리보호) ①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	②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독자권익위원회는 오보, 명예

<p>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③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p>	<p>훼손 등 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위원 구성은 사업자의 재량으로 하되,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은 사업자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이 없도록 한다.</p> <p>③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단, 본문 내 광고의 크기는 가로·세로 3cm 이하로 제한하고, 본문 사진 및 줄글을 가리지 않도록 한다.)</p>
<p>청원인 성명 : 박민지</p> <p>청원인 주소 :</p> <p>청원인 전화번호 :</p>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 1)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2887988>
- 2)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7862>
- 3) <http://tenasia.hankyung.com/archives/867220>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원제출용지

- ①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 ② 「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의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성명 :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길동 (인) 외 24인(법인)

-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청원소개의견서

-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 ②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청원서

-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